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하 남 시
【 자 치 행 정 과 】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의안 번호	2606
----------	------

제출연월일 : 2023. 2. 3.

제출자 : 하남시장

1.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구성일: 2016.1.22. ※ 우리 시 가입일: 2019.12.
- 회원정부: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광역1, 기초 43/ 붙임 참조)
 - 연간부담금: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 우리 시 '20년부터 납입 (납부액 누계: 30,000천원)
- 설립근거: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설립목적: 지방정부 연대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 실현
- 주요사업: 자치분권대학(교육), 자치분권 박람회, 자치분권연구 등

2. 탈퇴사유

- 2022년 이후 우리 시와 연계된 운영실적이 없음
- 현재 우리 시가 가입중인 다른 행정협의회*와 차별성이 없어 가입 유지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3년부터 탈퇴하고자 함
 - (우리 시 가입 행정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동부권협의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3. 행정사항

- 2022.12. 탈퇴신청서 제출(하남시→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 2023.2. 의회보고

관련 법령 및 협의회 구성현황

1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회의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회의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의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현황(2022.12.기준)

지역	지방정부(44)
서울(13)	서울시
	광진구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
	송파구
인천(4)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2)	광산구
	서구
대전(2)	서구
	유성구
경기(14)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오산시
	여주시
	양평군
	구리시
	화성시
	하남시
	파주시
충남(4)	아산시
	논산시
	공주시
	당진시
전남(2)	여수시
	영암군
부산(2)	연제구
	진구
경북(1)	포항시